

2026. 5. 1
제 1735 호



**법원
연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5월 1일(금요일)

제1735호

CONTENTS

●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717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728
●	신법령 목록		739
●	공고		746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59호 2026. 4. 10.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2.라. 중 “사람”을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으로 한다.

II.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II.에 2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규칙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가.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라.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II.3.나.(2)(다)를 (라)로 하고, II.3.나.(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신청

○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II.3.사.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마.를 준용함.

II.3.아.(3)(가) 본문 및 본문 외 첫 번째와 세 번째 · 중 “및”을 각각“또는”으로 하고, 첫 번째 · 중 “의퇴”를

“위탁”으로 하며, II.3.아.(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급기관의 장이나 (나)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II.3.아.(3)(나) 본문 외 세 번째 - 중 “재임용일부터”를 각각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로, “의뢰”를 “위탁”으로 한다.

II.3.아.(5)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본문 외 ○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III.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

III.4.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11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 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규칙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II.3.다.(8) 및 III.5.나.(4) 본문 중 “감사기관”을 각각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II. 2. 아.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 제3248호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2026년 3월 3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II. 2의1.·3. 나. (2) (다)·(라)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II. 3. 사.의 개정규정은 대법원규칙 제3248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일(2026년 3월 3일)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III. 2.·4. 마.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구 분	<input type="checkbox"/> 법 관 <input type="checkbox"/> 일 반 직 <input type="checkbox"/> 청 원 경 찰	④ 직(계)급 · 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면직일: .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input type="checkbox"/>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input type="checkbox"/>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 .) <input type="checkbox"/>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input type="checkbox"/>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 . . , 선고형: . . .)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임기만료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연금담당 (서명 또는 인)	감사담당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 당시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연금담당자 및 감사담당자가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7. ⑱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⑲란은 연령정년 및 임기만료에 따라 해당 정년을 기재(세 또는 년)
9. ⑳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㉑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법 관 <input type="checkbox"/> 일반직(임기제 제외) <input type="checkbox"/> 청원경찰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주 소 □□□□□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비위 사실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면직일: . . . 불송치 등 처분일: . . .)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 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 중 <input type="checkbox"/>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요구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자진퇴직)하기 위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조기·자진 퇴직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부.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 증빙자료 1부(「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확인	인사담당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조기퇴직수당과 자진퇴직수당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비위 사실란 중 면직일과 불송치 등 처분일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II. 명예퇴직수당</p> <p>1. (생 략)</p> <p>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p> <p>지급대상자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됨.</p> <p>가. ~ 다 (생 략)</p> <p>라.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같은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p> <p>마. ~ 사.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II. 명예퇴직수당</p> <p>1. (현행과 같음)</p> <p>2.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p> <p>-----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 사람(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 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 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야.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p> <p>2의1. 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p> <p>규칙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p> <p>가.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 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p> <p>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p> <p>다.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 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p> <p>가. (생 략)</p> <p>나. 지급신청</p> <p>(1) (생 략)</p> <p>(2) 신청절차</p> <p>(가)·(나) (생 략)</p> <p>〈<u>신 설</u>〉</p> <p>(다) (생 략)</p> <p>다. 결정기준</p> <p>(1) ~ (7) (생 략)</p> <p>(8)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u>감사기관</u>,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p> <p>라. ~ 바. (생 략)</p>	<p>라.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u>확정된 경우</u></p> <p>3. 명예퇴직수당의 지급</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급신청</p> <p>(1) (현행과 같음)</p> <p>(2) 신청절차</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지급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신청</u></p> <p>○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라) [현행 (다)와 같음]</p> <p>다. 결정기준</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 ----- -----.</p> <p>라 ~ 바.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나)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p> <p>- (생략)</p> <p>- (생략)</p> <p>- 환수절차: 환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u>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함.</u> 이 경우 <u>재임용일부터 30일</u>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가)를 준용함.</p> <p>〈신설〉</p> <p>(4) (생략)</p> <p>(5)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u></p> <p>○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u></p>	<p>(나) ----- ----- -----</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 ----- ----- <u>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u> ----- ----- <u>위탁</u> -----, ----- <u>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u> ----- -----.</p> <p>(다) <u>지급기관의 장이나 (나)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5) <u>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u></p> <p>○ -----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u> ----- -----.</p>

현 행	개 정 안
<p>(6) (생 략)</p> <p>Ⅲ.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p> <p>1. (생 략)</p> <p>2. <u>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u></p> <p><u>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동일함</u></p> <p>3. (생 략)</p> <p>4. 지급신청</p> <p>가. ~ 라. (생 략)</p> <p><u><신 설></u></p> <p>5. 지급결정</p> <p>가. (생 략)</p> <p>나. 지급대상자 결정방법</p> <p>(1) ~ (3) (생 략)</p> <p>(4)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규칙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 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함.</p> <p>6. · 7. (생 략)</p>	<p>(6) (현행과 같음)</p> <p>Ⅲ.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지급제외사</u> <u>유가 해소된 경우</u> <u>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준함</u></p> <p>3. (현행과 같음)</p> <p>4. 지급신청</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11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규칙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함.</u></p> <p>5. 지급결정</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급대상자 결정방법</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 ----- ----- ----- -----.</p> <p>6. · 7. (현행과 같음)</p>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0호 2026. 4. 22. 결재)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원행정처(대법원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포함)”을 “법원행정처(대법원, 양형위원회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포함)”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0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7조제4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각 해임·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 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다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매분기 6시간 이상”을 “매반기 12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나목”을 “제1의2호 가목”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고온·저온”을 “고열·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별표 법원행정처(대법원)란의 관리감독자 항목 중 “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과장”을 “관리운영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총 명 (남 명 /여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자격/면허번호	전화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자격/면허번호	전화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자격/면허번호	전화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명 / 여 명)		전화번호	
현장개요 (건설업인 경우만 작성)	현장명(사업개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월·일	해임 등 연·월·일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월·일	해임 등 연·월·일
산업보건의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선임 등 연·월·일	해임 등 연·월·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제18조제2항·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제20조제3항·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해임(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해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저수조 청소 용역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00클린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소: 지하 기계실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000-0000-0000
<input type="checkbox"/> 소재지: 경기도 00시 00동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김00 (서명)
<input type="checkbox"/> 계약 현황 1. 계약 금액: 2. 사업 기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사후정산서 제출 요함) 4. 주요 공정: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 가입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인력,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 및 현장 인력의 구성 본사와 현장의 인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를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조직도(예시)
	<pre> graph TD A["000(주) 대표이사 000"] --- B["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B --- C["보건관리자 000"] B --- D["안전관리자 000"] B --- E["관리감독자 000"] E --- F["(현장)안전보건담당자 000"] </pre>
	- 현장 종사자 인력 배치 현황: 전체 현장 종사자수 명(소장 0명, 반장 0명 등) (세부작업 또는 공정별 종사자수도 기재)
	- 자격·경력 현황: 반장 000 / 자격 수질환경산업기사 / 동종경력 00년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예시) 전기고압세척기, 수중배수펌프 0개, 산소농도측정기 0개, 배풍기

위험성평가				
공정별(작업별) 또는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및 유해·위험물질 관련 유해·위험요소 포함 등 자유롭게 작성 또는 별지 첨부 (공정별 예시)				
작업 순번	공정별	유해·위험사항	개선대책	조치 확인
1	청소 준비	배수펌프, 세정용 기구 등 장비 운반·반입중 장비를 떨어뜨려 맞을 위험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 작업 안전화 착용	
2	청소작업물 설치	조명등, 환기기구 설치 위해 저수조 상부 이동 시 추락 위험	저수조 상부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3	고압세척 작업	내부 세정 작업 시 질식 위험	작업 전 환기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산소 18% 이상, 가스 25% 이하 감시인 배치	
4	1차 세정작업			
5	부착물 세정 작업			
6	염소소독 실시			
7	잔수세척 작업			
8	저수조 청소 마무리			
(기계·기구·장비 및 유해·위험물질별 예시)				
기계·기구·장비 또는 유해·위험물질	유해·위험사항	개선대책	조치 확인	
수중배수펌프	감전	사전에 전선 피복 벗겨짐 확인 후 벗겨진 부분 있는 경우 절연테이프로 감기		
염소소독제				

실
행
수
준

안전점검 및 이행 확인																																	
	<p>▣ 안전점검 계획 및 조치이행</p> <p>- 안전점검 계획 (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실시자</th> <th>주기</th> <th>점검항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작업 시작 전 점검</td> <td>관리 감독자</td> <td>작업 시작 전</td> <td>기계·기구·장비 등 안전장치 기능 또는 피복 손상 등 확인</td> <td>이상 발견 시 수리 등 조치</td> </tr> <tr> <td></td> <td></td> <td>작업 중</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작업 후</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점검 결과 조치이행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기술 등)</p> <p>▣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p>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명</th> <th>수량</th> <th>지급대상</th> <th>유지 및 관리계획</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실시자	주기	점검항목	비고	작업 시작 전 점검	관리 감독자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장비 등 안전장치 기능 또는 피복 손상 등 확인	이상 발견 시 수리 등 조치			작업 중					작업 후			품명	수량	지급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구분	실시자	주기	점검항목	비고																												
	작업 시작 전 점검	관리 감독자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장비 등 안전장치 기능 또는 피복 손상 등 확인	이상 발견 시 수리 등 조치																												
			작업 중																														
		작업 후																															
품명	수량	지급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p>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명, 대상작업, 대상근로자, 교육내용, 실시시기·횟수·시간 등</p>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명</th> <th>대상작업</th> <th>근로자명</th> <th>교육내용</th> <th>시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교육명	대상작업	근로자명	교육내용	시간																											
교육명	대상작업	근로자명	교육내용	시간																													
안전작업허가																																	
<p>대상작업: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에 한함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관리자 배치계획 등),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 부여 등</p>																																	
운영 관리	비상대책																																
	<p>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 최소화 대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예상 피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연락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등 포함 비상연락망(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연락처 등)</p>																																
재해 발생 수준	산업재해현황																																
	<p>-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산업재해를 확인서 첨부)</p>																																
특이사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 략)</p> <p>3. “법원 사업장”이란 <u>법원행정처(대법원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포함), 법원공무원교육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원 등을 말한다.</u></p> <p>4. ~ 9. (생 략)</p> <p>10. (생 략)</p> <p>가. ~ 라. (생 략)</p> <p>마. 「<u>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문화재수리공사</u></p> <p>11. ~ 14.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p> <p>① ~ ③ (생 략)</p> <p>④ (생 략)</p> <p>1. (생 략)</p> <p>2. <u>법 제25조 및 법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 현업업무종사자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법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3. ~ 12. (생 략)</p> <p>제11조(안전관리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p>	<p>제3조(정의)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법원행정처(대법원, 양형위원회 포함),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 포함),</u> ----- -----.</p> <p>4. ~ 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국가유산수리공사</u></p> <p>11. ~ 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 단, 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11조(안전관리자) ① ----- ----- ----- -----</p>

현행	개정안
<p>야 한다. 다만, <u>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미만 근무하는 법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 . 다만, <u>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 ⑥ (생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 (보건관리자) ① <u>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미만 근무하는 법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12조(보건관리자) ① ----- ----- ----- ----- . 다만, <u>상시근로자 중 현업업무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 ⑥ (생략)</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 ① <u>현업업무종사자가 50명 이상 근무하는 법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4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보고 등) ① <u>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각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해임·해촉한 경우 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u>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u></p>	<p>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u>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u></p>

현 행	개 정 안
<p>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 여야 한다.</p>	<p>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 이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협 또는 건강장 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 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p>	<p>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 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p>
<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 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p>
	<p>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위 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 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 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 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 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p>
	<p>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6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p>	<p>제16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칙에 따른다.</p>
<p>제29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9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 ----- -----.</p>

현 행	개 정 안
<p>1. 현업업무종사자: <u>매분기 6시간 이상</u></p> <p>2.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및 <u>나목</u>과 같다.</p> <p>③ (생 략)</p> <p>제46조(보건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방사선·유해광선·<u>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u> 등에 의한 건강장해</p> <p>3. ~ 6.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1. -----: <u>매분기 12시간 이상</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의2호 가목</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6조(보건조치)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고열·한랭</u>·----- -----</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u></p> <p>② (현행과 같음)</p>

신법령 목록 (2026. 4. 1 ~ 2026. 4. 15)

법 률

법률제2152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213	2026. 4. 7.	5
법률제215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152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152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1525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법을 위한 법률	"	"	10
법률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1528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2152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1530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15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15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153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	44
법률제2153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21536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1213	2026. 4. 7.	58
법률제21538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153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 별법	"	"	60
법률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	"	72
법률제2154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215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215	2026. 4. 9.	3
법률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
법률제21544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21218	2026. 4. 14.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23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09 (별권)	2026. 4. 1.	2
대통령령제36236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11	2026. 4. 3.	4
대통령령제36237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6238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13	2026. 4. 7.	74
대통령령제36239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624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6241호	군예식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6242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	"	"	82
대통령령제36243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3624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3624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5
대통령령제3624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3624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	"	89
대통령령제362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0
대통령령제3624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94
대통령령제36250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	"	95
대통령령제3625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3625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18	2026. 4. 14.	5
대통령령제3625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6254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	"	9
대통령령제36255호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	"	"	12
대통령령제3625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

대통령령제3625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18	2026. 4. 14.	14
대통령령제362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625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626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7
대통령령제3626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0
대통령령제36262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36263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총리령

총리령제211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 정정	21213	2026. 4. 7.	102
-----------	-------------------------------------	-------	-------------	-----

부 령

국가보훈부령제66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09	2026. 4. 1.	4
보건복지부령제116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보건복지부령제1167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6
보건복지부령제1168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	"	7
산업통상부령제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재정경제부령제2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행정안전부령제6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국토교통부령제1575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10	2026. 4. 2.	4
보건복지부령제1169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외교부령제159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6
해양수산부령제78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7
행정안전부령제616호	행정협의회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0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2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11	2026. 4. 3.	7
보건복지부령제117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국토교통부령제15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212	2026. 4. 6.	4
고용노동부령제464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13	2026. 4. 7.	106
국토교통부령제15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3
국토교통부령제157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4

행정안전부령제61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21213	2026. 4. 7.	115
행정안전부령제61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16
국토교통부령제1578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15	2026. 4. 9.	5
산업통상부령제1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해양수산부령제792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3
법무부령제1112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17	2026. 4. 13.	3
행정안전부령제618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	5
교육부령제381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	21218	2026. 4. 14.	34
보건복지부령제117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219	2026. 4. 15.	4

공고

관인등록 공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0조, 동 시행내규 제56조에 의하여 의정부
지방법원의 관인을 별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2026. 5. 1. 제1735호
Supreme Court of Korea

